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노금식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폭염만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한파 피해 예방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충청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 지원, 쉼터 지원, 저감시설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5. 검토내용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 자 연 재 해 대 책 법 > —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 현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파피해 저감 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계	스마트쉘터	방풍시설	온열의자	전기히터
계	709개	36개소	158개	470개	45개
청주시	67			67	
충주시	108	18	18	27	45
제천시	92	10	40	42	
보은군	6			6	
옥천군	44			44	
영동군	34	4	6	24	
증평군	42	2		40	
진천군	162	2	53	107	
괴산군	26		10	16	
음성군	38			38	
단양군	90		31	59	

★ `24.11. 기준

- 한파저감시설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증가 요인은 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3. 6.~'25. 3.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폭염만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파를 포함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에 따른 한파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조례 개정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